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삭제 <2020. 3. 10.>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